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제895호 2024. 4. 25.(목)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의령군 조례 제2653호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의령군 조례 제2654호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의령군 조례 제2655호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의령군 조례 제2656호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의령군 조례 제2657호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의령군 조례 제2658호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의령군 조례 제2659호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 38
- 의령군 조례 제2660호 의령군 귀향인 지원 조례 44
- 의령군 조례 제2661호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 의령군 조례 제2662호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4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24-75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 67
- 의령군 고시 제2024-78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71
- 의령군 고시 제2024-82호 도로명주소 고시 76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24-545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8
- 의령군 공고 제2024-547호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4
- 의령군 공고 제2024-548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관한 열람 공고 …………… 93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53호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u>」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u>용도폐지</u></p> <p>5.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5. (현행과 같음)</p>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54호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령군청”을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기준”을 “설치·운영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을 “팀장, 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상근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담당실장”을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임명”을 “임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상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
별”을 “하되,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및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팀장 중에서, 팀장은 팀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 중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원”을 “센터장과 상담원”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상담원”을 각각 “센터장과 상담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원”을 “센터장과 상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상담원”을 “센터장과 상담원”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징
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21조 중 “상담원”을 “센터장과 상담원”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청소년사업 안
내」를 준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입지기준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3개소 이상

나)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나. 규모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다. 운영기준

-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의령군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이 경우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 나) 그 밖에 업무 관련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별표 3]

경력산정기준표(제21조 관련)

직종별	구 분	경 력	환산비율
전 문 상담원 (센터장, 팀장, 팀원)	“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에서의 해당 직종 근무경력(상근)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의 해당 직종 근무경력(상근) ○ 군 의무복무경력 ○ 청소년동반자 근무경력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원 근무경력 ○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구)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전문상담원 근무경력 	100%
	“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다만,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별표6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기관’은 동일하게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상담 관련 근무경력(상근)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80%
	“병”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상담기관의 상담원 근무경력(상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시설에서 상임임시직·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 근무경력 	50%

※ 공공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사무실은 <u>의령군청 소재지</u>에 둔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 ----- ----- <u>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u> ----- -----.</p>
<p>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u>설치·기준</u>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설치·운영기준) ----- <u>설치·운영기준</u>-----.</p>
<p>제5조(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 <u>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u>으로 구성한다.</p> <p>② 센터장은 <u>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를 상근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실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상담복지센터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u></p>	<p>제5조(구성) ① ----- ----- <u>팀장, 팀원</u>----- -----.</p> <p>② ----- <u>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거나 주민 생활지원과장</u>----- ----- ----- ----- ----- ----- ----- <u>임용</u>-----.</p>
<p>제6조(센터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u>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6조(센터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상담원 중 군수가 지정한</u></p>

제7조(선발 및 임용) ① 제5조에 따른 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제8조(신분보장) ① (생략)

② 센터장과 상담원은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복무) ① 상담원의 복무는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며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선발 및 임용) ① -----

----- 하되,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③ (중전 제2항과 같음)

④ (중전 제3항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및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팀장 중에서, 팀장은 팀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

제9조(복무) ① 센터장과 상담원-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0조(보수) ① 상담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상담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면직) 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6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상담원의 징계는 「의령군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수) ① 센터장과 상담원

-----.

② 센터장과 상담원

-----.

제11조(면직) 센터장과 상담원

-----.

1. 2.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20조(징계) 센터장과 상담원---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p><u>규칙」을 준용한다.</u></p> <p>제21조(경력산정) <u>상담원의 경력 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u></p> <p>제22조(적용) <u>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u></p>	<p><u>등 관리 규정」-----.</u></p> <p>제21조(경력산정) <u>센터장과 상담원-----.</u></p> <p>제22조(준용) <u>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청소년사업 안내」를 준용한다.</u></p>
---	---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령군수

의령군 조례 제2655호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및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3.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군에서 제작·구입하거나 군에 소재한 개인, 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의령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캐릭터상품”이란 군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로고로 직접 제작되는 상품과 군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 관광협회를 말한다.
8. “캠투어”란 군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9. “스탬프투어”란 군내에 특정 구간이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는 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관광객 유치 지원”을 “관광진흥과 홍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과 사전협의 및 신청공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나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3.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를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관광기념품 제작·판매 및 관측활동)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측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및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군 홍보관,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스탬프 투어 완주자
3. 군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4. 언론매체 홍보 지원
5.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6.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7. 위탁판매점에 관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3호 중 “국·내외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광사업자”를 “관광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관광객 유치”로 한다.

제15조 중 “법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p> <p>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p> <p>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p> <p>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p> <p>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p> <p>6.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자를 말한다.</p> <p>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및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p> <p>3.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군에서 제작·구입하거나 군에 소재한 개인, 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p> <p>4. “캐릭터상품”이란 군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로고로 직접</p>

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작되는 상품과 군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8. “팸투어”란 군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9. “스탬프투어”란 군내에 특정 구간이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 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군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군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장을 찍는 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2장 관광진흥과 홍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역사

· 문화 · 예술 · 자연 등의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과 사전협의 및 신청공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나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3.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지원 제외) -----

제5조-----

1. 2. (현행과 같음)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관광기념품 제작·판매 및 판촉활동)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및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군 홍보관,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스탬프 투어 완주자

3. 군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4. 언론매체 홍보 지원

5.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6.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7. 위탁판매점에 관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5. (생략)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

제9조(업무) -----
-----.

1. 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4. 5.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의 위탁) -----

----- 관광

업자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캠투어 사업
3. ~ 7. (생략)

② (생략)

제15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
-----.

제11조(대상 업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관광객 유치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

----- 영 제5조 -----

----- 100분의 30 -----

-----.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56호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 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10시부터 17시”로 한다.

제9조 중 “담당부서”를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 및 타 지역 문화 탐방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보수교육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p> <p>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실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p> <p>제7조(준수사항)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3조(교육)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제8조(근무시간 등) ①·② (생략)

③ 해설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활동실적 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활동지원 등) ①·② (생략)

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11조(준용) (생략)

<신설>

제8조(근무시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0시부터 17시-----

-----.

제9조(활동실적 관리) -----

----- 담당부서장-----
-----.

제10조(활동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3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신 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57호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중 안전기준 조치 예외와 관련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u>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제16조의 3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u>②</u>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 3호 단서 중 안전기준 조치 예외와 관련한 “<u>조례로 정한 사유</u>”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u> 3. <u>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u>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8조의2</u> (생 략)	<u>제8조의3</u>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58호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공동주택관
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라 함은”을 ““관리주체”
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처리시설에 한한다”를
“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방수, 지붕 보수, 승강기 교체 공사 및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동주택관리법</u>」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관리주체</u>”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 략)</p> <p>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7. (생 략)</p> <p>8. <u>기타</u>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 시설(옹벽·담장·쓰레기수거 및 <u>처리시설에 한한다</u>)의 개·보수</p> <p>9. <u>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및 방수</u></p> <p style="margin-top: 20px;">③·④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u>공동주택관리법</u>」-----</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관리주체</u>”란 -----</p> <p>-----</p> <p>-----</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u> -----</p> <p>-----</p> <p style="padding-left: 20px;"><u>처리시설 등</u>-----</p> <p>9. <u>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방수, 지붕 보수, 승강기 교체 공사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u></p> <p style="margin-top: 20px;">③·④ (현행과 같음)</p>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59호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
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의령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골뚝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원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높이 15미터 이상의 골뚝(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

제11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의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제12조(현장점검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 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 대가를 적용한다.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귀향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60호

의령군 귀향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의령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
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의령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사업
6. 귀향세대 5가구 이상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7.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8.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령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의령군 귀향인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61호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구”를 “마련하고자 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업체”를 “건설산업체”로,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를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건설업체”를 “지역건설산업체”로,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권장할 수”를 “수”로 한다.

제4조 중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방지”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를 “역할을 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로, “항목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조사일시 및 내용”을 “조사 일시 및 내용 등 조사계획”으로,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발전 등 필요시 실태조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개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 공동

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으로 할 것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

제5조의3(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
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군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4(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6조 제목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단 중 “지역건설산업”을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지역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애로사항”을

“고충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두퇴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주무관”을 “두퇴,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지역건설 산업 보호)”를 “(지역건설산업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 중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를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로, “대금지급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명확히”를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으로, “미 수령”을 “미수급”으로 한다.

제16조 중 “타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군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건설용역업을 말한다.</p> <p>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중장비 업체를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p>	<p>제2조(정의) ----- -----.</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u>의령군</u>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p> <p>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u>의령군수</u> (이하 “군수”라 한다)-----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p>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체로 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설한 업체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 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

마련하고자 노력-----.

⑤ ----- 건설산업체 -----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및 -----.

⑥ ----- 지역건설산업체 ----- 수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 역할을 하여야 -----.

제5조(실태조사) ① -----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

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건설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의거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7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내용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건설산업발전 등 필요시 실태조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

----- 각 호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조사 일시 및 내용 등 조사 계획 -----

--- 수 -----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으로 할 것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

제5조의3(지역 내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군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4(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신 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 6.·7.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 -----
-----.

② -----
-----.

1.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 계획의 수립-----
2. ~ 4. (현행과 같음)
5. ----- 고충사항 -----
- 6.·7.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협의·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
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작-----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건설산업체 특례) ①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계약한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특별한 협력과 지원을 한 경우, 타 법령상 주어지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편의 지원과 혜택을 우선 부여할 수 있다.

② 회계 관계자는 제1항의 각종 공사·용역 준공 및 기성대가 등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지급 하는 등 절차나 방법을 개선하여 관급공사 신뢰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건설 산업 보호)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④ (현행과 같음)

⑤ -----
-----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제14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

및 제35조에서 정하는 하도급 대금지급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등 공사비 미 수령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군에서 적용 관리하는 타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 미
수급-----
-----.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

----- 다른 조례-----
-----.

<삭 제>

제28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조례 제2662호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월 정 수 당
	의정자료수집 · 연 구 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월 1,704,540원 - 2024년~2026년도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현행>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월 정 수 당
	의정자료수집 연 구 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2023년도: 월 1,704,540원 2024년~2026년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개정안>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월 정 수 당
	의정자료수집 연 구 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 2023년도: 월 1,704,540원 - 2024년~2026년도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의령군수

1. 하천공사실시계획 :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준공예정일

명칭	하천명	위치			목적	공사개요	공사기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대의 천곡천 심지지구 하천정비사업	천곡천	의령	대의	심지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를 예방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하천정비 428m	2024. 7. ~ 2025. 7. (12개월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의령군수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및 권리자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055-570-3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은 의령군(안전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편입용지조서

사업명 : 대의 천곡천 심지지구 하천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대의면 심지리	300	미분할	천	34,737	1,916	1/1	농림지역	국(환경부)					
2	대의면 심지리	395	395-2	전	623	301	1/1	보전관리 지역	공*갑	의령군 대의면 심지리 5**				
3	대의면 심지리	394	394-3	전	1,138	335	1/1	보전관리 지역	공*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길 ** (중곡동)				
4	대의면 심지리	701	미분할	구	1,213	58	1/1	보전관리 지역	국(농림축 산식품부)					
5	대의면 심지리	333	333-2	전	1,389	20	1/1	보전관리 지역	공*덕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				
6	대의면 심지리	549	미분할	제	3,903	1,815	1/1	농림지역	국(국토교 통부)					
7	대의면 심지리	387-6	387-15	답	2,126	16	1/1	농림지역	공*덕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				
8	대의면 심지리	387-9	미분할	답	278	24	1/1	농림지역	의령군					
9	대의면 심지리	387-8	미분할	답	122	122	1/1	농림지역	미*기		김*엽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한티로*길 **_*	토지 대장 상 소 유 자	
10	대의면 심지리	387-5	387-14	답	2,849	297	1/1	농림지역	김*엽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한티로*길 **_*	의령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총익로 40 (대의지점)	근저 당권	
11	대의면 심지리	387-4	387-13	답	727	90	1/1	농림지역	김*엽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한티로*길 **_*	의령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총익로 40 (대의지점)	근저 당권	
12	대의면 심지리	387-3	387-12	답	748	108	1/1	농림지역	윤*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길 *** *0*동 *70*호 (사당동,극동아파트)				
13	대의면 심지리	387-2	387-11	답	1,330	267	1/1	농림지역	김*엽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한티로*길 **_*	의령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총익로 40 (대의지점)	근저 당권	
14	대의면 심지리	387-7	387-16	답	1,010	175	1/1	농림지역	공*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7*, *02동 **02호 (다대동,현대아파트)				
15	대의면 심지리	387-1	387-10	답	1,307	205	1/1	농림지역	천*임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6-*				
16	대의면 심지리	548-2	548-3	도	240	59	1/1	농림지역	국(농림축 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7	대의면 십지리	386-5	386-10	답	1,097	177	1/1	농림지역	공*석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				
18	대의면 십지리	386-4	386-9	답	510	79	1/1	농림지역	공*석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				
19	대의면 십지리	386-3	386-8	답	866	127	1/1	농림지역	공*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0, 207동 *206호 (양덕동,메트로시티2단지)				
20	대의면 십지리	386-2	386-7	답	2,664	388	1/1	농림지역	임*성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55, **5동 *50*호 (중흥S-클래스진영*단지)				
21	대의면 십지리	386-1	386-6	답	3,384	372	1/1	농림지역	김*수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	의령추산 동소 협합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0길 32	근저 당권	
22	대의면 십지리	337	337-1	구	4,723	44	1/1	농림지역	국(농림축 산식품부)					
23	대의면 십지리	385-4	385-10	답	2,994	213	1/1	농림지역	공*봉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5				
24	대의면 십지리	385-3	385-9	답	1,719	223	105784 /17190 0	농림지역	공*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5* 2*6동 *0*호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4-1	대의면 십지리	385-3	385-9	답	1,719	223	16529/ 171900	농림지역	공*성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0				
24-2	대의면 십지리	385-3	385-9	답	1,719	223	16529/ 171900	농림지역	공*수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십지리 52*				
24-3	대의면 십지리	385-3	385-9	답	1,719	223	16529/ 171900	농림지역	공*주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성호동 **.*				
24-4	대의면 십지리	385-3	385-9	답	1,719	223	16529/ 171900	농림지역	공*식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길 2* (봉덕동)				
25	대의면 십지리	385-2	385-8	답	1,261	182	1/2	농림지역	공*석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6번길 2*.* (광안동)				
25-1	대의면 십지리	385-2	385-8	답	1,261	182	1/2	농림지역	공*만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십지리 5*0				
26	대의면 십지리	385-5	385-11	답	1,130	110	1/1	농림지역	정*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2길 **.*				
27	대의면 십지리	385-1	385-7	답	943	155	1/1	농림지역	정*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2길 **.*				
28	대의면 십지리	385-6	미분할	답	30	30	1/1	농림지역	의령군					
29	대의면 십지리	548-1	미분할	도	834	25	1/1	농림지역	국(농림축 산식품부)					

편입물건조서

사업명 : 대의 천곡천 심지지구 하천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단위	지분	물 건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분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대의면 심지리	333	333-2	울타리	철재, 그물망, 6m, H:1.2	1	식	1/1	공*덕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8				실제지번 : 333-2, 300
2	대의면 심지리	333	333-2	태양광패널		1	식	1/1	공*덕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8				실제지번 : 300
3	대의면 심지리	387-2	387-11	논두렁	시멘트콘크리트, 13m	1	식	1/1	김*엽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한티로*길 **.*				
4	대의면 심지리	394	394-3	울타리	철재, 그물망, 60m, H:1.2	1	식	1/1	공*웅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2*.*				실제지번 : 394-3, 300
5	대의면 심지리	394	394-3	전기울타리	철재, 전기선, 태양광설비 포함, 62m, H:1.2	1	식	1/1	공*웅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2*.*				실제지번 : 394-3, 300
6	대의면 심지리	394	394-3	양수기	모터 포함	1	식	1/1	공*웅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2*.*				실제지번 : 300
7	대의면 심지리	394	394-3	배관매설	PE관(300mm), 4m	1	식	1/1	공*웅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망용로*길 2*.*				실제지번 : 300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의령군수

1. 하천공사실시계획 :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준공예정일(변경없음)

명칭	하천명	위치			목적	공사개요	공사기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가락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용덕천	의령	용덕	가락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하천정비 963m	2023.12. ~ 2024.12. (12개월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의령군수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및 권리자 : 붙임 참조(변경)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055-570-34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은 의령군(안전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토 지 조 서(변경)

구 분	주 소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전	후		대장면적 (분할전)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74	도	3,210	5	농림축산식품부	국	
2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1	58-37	답	732	175	의령군	공	
3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	58-38	답	736	91	의령군	공	
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3	58-39	답	1,680	19	와요리 ***	홍*기	
5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77	77-1	구	2,282	109	농림축산식품부	국	
6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588-44	천	26,484	2,575	국토교통부	국	
7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588-35	답	160	160	국토교통부	국	
8(당초)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77	천	443	443		전*진	
8(변경)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77	천	443	443		미등기1	토지대장상 (전*진)
9(당초)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76	임	417	417		전*진	
9(변경)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76	임	417	417		미등기2	토지대장상 (전*진)
10(당초)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75	천	278	278	죽전리	전*룡	
10(변경)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75	천	278	278		미등기3	토지대장상 (전*룡)
11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14-1	천	36,353	5,947	국토교통부	국	
12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74	천	707	707	147	전*진	
13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2	58-40	답	2,388	28	의령군	공	
1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3	58-41	답	1,494	22	의령군	공	
15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4	58-42	답	1,821	32	의령군	공	

16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5	58-43	답	659	15	의령군	공	
17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6	58-44	답	2,441	67	의령군	공	
18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14-5	답	4	4	국토교통부	국	
19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7	58-45	답	2,824	82	의령군	공	
20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58	답	5	5	죽전리	전*환	
21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77	77-2	구	2,282	1,084	농림축산식품부	국	
22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8	58-46	답	2,718	101	의령군	공	
23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29	58-47	답	951	46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6길 ***	김*석	
2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256	답	35	35	의령군	공	
25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30	58-48	답	701	36	374	황*이	
26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31	58-49	답	833	45	의령군	공	
27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14-6	답	136	136	기획재정부	국	
28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32	58-50	답	2,276	159	의령군	공	
29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14-9	답	13	13	의령군	공	
30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33	58-51	답	2,055	204	의령군	공	
31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14-10	답	296	296	국토교통부	국	
32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34	58-52	답	1,733	213	정곡면 백곡리 ***	전*승	
							칠곡면 외조리 ***	전*환	
33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35	58-53	답	583	79	의령군	공	
3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14-12	답	67	67	140	전*술	
35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		604-1	구	13,101	204	농림축산식품부	국	
36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58-36	58-54	답	1,959	659	의령군	공	

37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14-13	답	29	29	의령군	공	
38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74	74-1	도	3,210	107	농림축산식품부	국	
39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4	63-40	답	1,640	130	의령군	공	
40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25	구	46	46	의령군	공	
41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5	63-41	답	719	23	374	황*이	
42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26	구	112	112	의령군	공	
43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6	63-42	답	1,437	51	의령군	공	
4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27	구	189	189	의령군	공	
45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7	63-43	답	1,941	96	의령군	공	
46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8	63-44	답	895	53	의령군	공	
47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28	구	101	101	의령군	공	
48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29	구	105	105	의령군	공	
49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9	63-45	답	1,001	41	의령군	공	
50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0	구	33	33	의령군	공	
51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0	63-46	답	321	13	의령군	공	
52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1	구	119	119	의령군	공	
53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1	63-47	답	1,551	56	의령군	공	
5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75	75-1	구	1,834	696	농림축산식품부	국	
55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2	구	121	121	의령군	공	
56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2	63-48	답	1,962	66	의령군	공	
57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3	63-49	답	1,871	58	의령군	공	
58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3	구	77	77	의령군	공	

59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4	구	39	39	의령군	공	
60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4	63-50	답	621	16	의령군	공	
61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5	63-51	답	1,224	35	의령군	공	
62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5	구	96	96	의령군	공	
63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6	구	31	31	국토교통부	국	
6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6	63-52	답	303	9	국토교통부	국	
65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7	구	210	210	의령군	공	
66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7	63-53	답	1,279	49	의령군	공	
67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8	구	320	320	의령군	공	
㉞(당초)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8	63-54	답	961	59	진주시 이현남동 *~**, *~***	이*훈	
㉞(변경)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8	63-54	답	961	59		미등기4	토지대장상 (이*훈)
69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39	구	377	377	의령군	공	
70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19	63-55	답	472	56	의령군	공	
71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20	63-56	구	351	309	의령군	공	
72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가락리	63-24	63-57	도	254	84	의령군	공	
합 계						18,570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4 - 8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의령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길 5 등 3
- 도로명주소 폐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6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별 지 참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055-570-2440)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의령군 철곡면 산북리 764	경상남도 의령군 철곡면 한티로 424-63	2024-04-24	큰재, 높은고개란 고유어인 한티에서 유래된 가파르면서도 험하고 외진 잣길 한티재가 위치한 특성을 반영
2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368-1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낙서로 553-16	2024-04-24	행정구역명(낙서면)을 이용하여 낙서로로 명명
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87-5, 287-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길 5	2024-04-24	의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아홉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내역

구분	폐지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69	24-04-23	건물 철거 후 신축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 구성을 현행화하기 위해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수 상위법령과 문구 일치(안 제13조제1항)
- (당초) 10명 이내 ⇒ (개정 안) 5명 이상 15명 이하
- 공무원 위원의 인원 제한 규정 변경(안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제2호)
- (당초)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
⇒ (개정 안)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임명대상 위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제3항제1호)
 - (당초) 환경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재생과장
 - ⇒ (개정 안)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조례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도시재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전화 : 055)570-3542
 - 팩스 : 055)570-3509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055-570-3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10명 이내”를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를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중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를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로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u>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u>이어야 한다. 다만, 양성 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u>한다.</p> <p>1. <u>환경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재생과장</u></p> <p>2. 3. (생략)</p> <p>④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p>	<p>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u>5명 이상 15명 이하</u>-----.</p> <p>-- <u>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u>-----.</p> <p>-----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p> <p>2. 3.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
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
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 5. (생략)

-----.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
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
원수-----.

3. ~ 5. (현행과 같음)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명 및 조례 내 차별적 용어 변경
- 연령 제한이 있어 여성민방위기동대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3. 주요내용

- 가. 차별적 용어 변경(안 제1조~제3조, 제13조) : 주부 → 여성
- 나. 연령 규정 개정(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우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2) 전 화: 055-570-3404, 팩스: 055-570-340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각각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부”를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작성”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읍면”을 “읍·면”으로 한다.

제13조 중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를 “여성민방위기동대연합회”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각각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의령군 <u>주부민방위기동대</u>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여성민방위기동대</u>----- -----.</p>
<p>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별 <u>주부민방위기동대</u>(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2조(설치) ----- ----- <u>여성민방위기동대</u>----- -----.</p>
<p>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의령군 ○○읍·면 <u>주부민방위기동대</u>로 한다.</p>	<p>제3조(명칭) ----- ----- <u>여성민방위기동대</u>----- -----.</p>
<p>제4조(편성)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u>주부</u> 중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편성한다.</p> <p>1. 2. (생략)</p> <p>② <u>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된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u></p> <p>③ (생략)</p>	<p>제4조(편성) ① ----- ----- <u>20세 이상의 여성</u>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서 제출) 지원자는 별지</p>	<p>제5조(지원서 제출) -----</p>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동대 편입 지원서를 작성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기동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연합회) ① 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
방위 발전을 위하여 의령군 주부
민방위기동대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작성하여 --
-----.

제6조(정원) ----- 읍·면

-----.

제13조(연합회) ① -----

----- 여성
민방위기동대연합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읍·면)

일련번호	성명	주소	직업	연락처	보유기술 및 기능명칭	편성 연월일	비고
	생년월일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읍·면)

일련번호	성명	주소	직업	연락처	보유기술 및 기능명칭	편성 연월일	비고
	생년월일						

<현행>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폰:	세대주와의 관계	의
	직업			
보유기술 및 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지원자 (서명 또는 인) </div>				
구비서류 제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여성민방위기동대 지원 필증				
지원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의령군수 (인) 읍·면장 </div>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관한 열람 공고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여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7일

의 령 군 수

1. 건 명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4. 열람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무전리 174-1번지 일원
- 해제면적 : 농업진흥구역 9,774㎡
- 해제사유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이전 위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나.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6필지		11,069	9,774	
1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174-1	답	1,608	1,406	
2				174-2	답	2,390	2,097	
3				174-3	답	1,592	1,400	
4				174-4	답	1,393	1,223	
5				175	답	2,745	2,424	
6				176-1	답	1,341	1,224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570-4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의견제출 내용	건명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토지	위 치 : 의령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면 적 : m ²
	의 견	
기 타		

농지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